

제 2011-18호(허가년월일 : 2011. 4. 19.)

법인 설립 허가증

1. 법인명 : 사단법인 순교자의소리(The Voice of The Martyrs)

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7길 15 (정릉동)

3. 대표자

- 성명 : 폴리 현숙
- 생년월일 : [REDACTED]
- 주소 : [REDACTED]

4. 사업내용

-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순교자들의 설교와 가르침,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판 및 전자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.
- 순교자들의 설교와 가르침, 이야기를 일반 대중과 나눌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출판물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.
- 한국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캠페인 및 프로젝트를 기획하고, 자원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.
- 제자 훈련 및 선교 훈련학교를 운영한다.
- 기독교의 순교 신학을 설명하고 장려하거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공식 행사 및 예배에 특별 강사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섬긴다.
- 기독교 금지국 혹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이웃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, 방송 및 전자 매체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를 지원하며 제자된 삶과 역사 속 기독교 순교에 관해 훈련하고 재정을 보조한다.

5. 허가조건 : 뒷면에 기재함.

「민법」 제32조와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18년 7월 24일

(소재지 및 사업변경에 따른 재발급)

서울특별시



〈허 가 조 건〉

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

1.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
2. 『민법』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
3.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4.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
5.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

〈변경 사항〉

일 자	내 용	확 인
2014.12.02	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	
2018.07.24	소재지 및 사업변경으로 인한 재발급	